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6210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2. 8.
판 결 선 고 2016. 1. 19.

주 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0,126,000원, 지방교육세 18,037,800원, 농어촌특별세 9,018,900원(각 가산세 포함)에 대한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 시 출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인 [] 숙(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고 한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1. 6. 이 사건 기숙사 부지로 [] 시 [] 구 [] 동 382-1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2. 16.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면제되었던 취득세 180,126,000원, 지방교육세 18,037,800원, 농어촌특별세 9,018,9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7.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4.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5.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학사업 중 하나로 이 사건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1. 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기부금 모집 등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며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반대 여론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15. 3. 25.에서야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서 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추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



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장학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학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장학단체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1. 2. 24. ■■■시와 함께 이 사건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계획한 후, 2011. 3. 4. 이 사건 기숙사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기로 하고, 2011. 4.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였으나 낙찰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시는 2011. 12. 22. ■■■구가 시행하는 지방대학생 공동학사 건립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는데, ■■■시와 ■■■구 사이의 공동학사 부지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2012. 5. 24.까지도 위 공동학사 건립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가 다시 매물로 나오자 원고는 2012. 8.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를 50억 원에 매입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시의회의는 2012. 10. 11. 원고와 ■■■시가 자체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원고의 재단기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시의 예산으로 이 사건 기숙사 건축비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시가 ■■■구와의 공동학사 건립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을 정읍시에 권고하였고, ■■■도는 2012. 11. 2. ■■■시에 원고와 ■■■시의 이 사건 기숙사 건립사업에 관하여 '■■■시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의회 동의를 얻은 후 재상정'하라는 내용의 2012년도 제4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1. 6. 이 사건 토지를 45억 원에 매수한 후, 2013. 1. 15. 이 사건 토지에 안내판 설치공사를 하였고, ■■■시에향운동본부가 2013. 1. 31.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기숙사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으며, ■■■도는 2013. 4. 1. ■■■시에 원고와 ■■■시의 이 사건 기숙사 건립사업이 적정사업(예산반영 및 정상 추진)에 해당하므로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2013년 제1차 지방재정 주·융자사업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시는 2014. 7. 31. ■■■시 추경예산으로 이 사건 기숙사 건립 사업에 2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여 2014. 9. 15. 그 집행이 이루어졌고, 2015. 1. 2. 19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5. 3. 25.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 8. 18. 착공하였다.



3) 위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정읍시와 함께 이 사건 기숙사 건립을 계획하고 이 사건 부지를 최초 매입하려고 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부지 매입 또는 자체적 기숙사 건립에 특별한 반대여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정읍시가 ■■■구의 공동학사 건립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지만 위 공동학사 건립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기숙사 부지로 매입하려고 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다시 매물로 나오자 ■■■시가 위 공동학사 건립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자체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정읍시의회의 반대 등이 있었으나, 2013. 4. 1. ■■■도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기숙사 건립비용 (부지매입 대금 포함)으로 65억 원 정도를 마련한 상태에서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 5월경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모금하기도 하였으나 반대 여론으로 인하여 2013년도 정읍시 추경예산에 이 사건 기숙사 건립에 대한 출연금이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금활동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계속적으로 여론 설득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정읍시의 2014년도 추경예산에 이 사건 기숙사 건립에 대한 출연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정읍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2014. 9. 15.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기숙사 신축공사 준비를 하여 2015. 2. 17.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2015. 3. 25.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 8. 18.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부터 그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이행해 나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인 기숙사 신축공사에 나아기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김선아

판사 조 실